

## #13.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(3)

### -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-

안녕하세요. 김란 세무사입니다.

이번 연구자료를 통해 ‘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

#### (1) 개인기업의 결산

법인전환 해당 연도 1 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,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#### (2) 현물출자 계약

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합니다. 현물출자계약 체결 시점에는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#### (3) 사업자등록 신청

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며,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현물출자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.

#### (4) 자산의 감정 및 회계감사

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법원의 현물출자가액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자산·부채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.

#### (5)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

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고,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
## (6)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

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,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.

## (7) 정관 작성

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, 정관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
## (8) 현물출자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

상법상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,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
## (9) 법인설립등기

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.

## (10) 재산 명의이전 및 취득세 신고

현물출자 자산 중 부동산, 차량, 예금, 차입금 등 재산의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,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.

## (11)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

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개인기업주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신설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세움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Copyright © 2023 SEUM Tax

김란 세무사

CTA

[ran.kim@seumlaw.com](mailto:ran.kim@seumlaw.com)